

「구미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장미경 의원

2. 찬 성 자 : 김근한 의원 외 7인

### 3.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규정을 마련하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이로 인한 2차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구미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5. 참고사항

### ○ 관계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의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5조, 제15조의2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8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부서검토: 가족정책과 의견제출

○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6. 검토의견

### ○ 본 조례안은

- 상위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확산과 그로 인한 2차 피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 및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구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 ○ 검토 결과,

-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종전보다 확대·정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행위를 포함하고, 나아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한 성적 자율권·인격권 침해 행위 전반을 포괄하도록 함으로써, 조례 적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3조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별도로 명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피해자 지원 절차, 상담·연계 체계, 유관기관 협업 구조를 구체화한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특성상 신속한 초기 대응과 2차 피해 차단이 핵심인 만큼, 경찰·교육기관·전문 상담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매뉴얼 정비가 요구됨.
- 또한 인공지능 기반 범죄 유형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술 변화에 따른 범죄 유형 분석 및 정책 보완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임.